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박준태 · 김상훈
백종현 · 임종득 · 유용원
조지연 · 고동진 · 안철수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.

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,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,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

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(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현역병의 복무를 마친”을 “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3의 제목 중 “임기제부사관”을 “단기복무 부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임기제부사관을”을 “「군인사법」 제6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(이하 이 조에서 “단기복무 부사관”이라 한다)을”로, “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”을 “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임기제부사관”을 “단기복무 부사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2(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)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<u>현역병의 복무를 마친</u>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(이하 “임기제부사관”이라 한다)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20조의2(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</u>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3(<u>임기제부사관</u>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국방부장관은 <u>임기제부사관을</u>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	제20조의3(<u>단기복무 부사관</u>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<u>「군인사법」 제6조 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(이하 이 조에서 “단기복무 부사관”이라 한다)을</u> -----

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</u> 양성기관(이하 “전문인력 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<u>임기제부사관</u>의 교육·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-<u>단기복무 부사관 전문인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<u>단기복무 부사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